

술모임에 음주운전까지...코로나 망각한 사람들

연말 음주단속 동행해 보니

방역 흐리는 운전자 잇따라 적발
광주 올해 4038건...10.8% 증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크게 늘어
광주경찰, 1월 말까지 집중단속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권고를 따르지 않고 소규모 모임 등을 갖고 음주운전까지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미꾸라지 시민들’로 인해 정부가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 19일 실시한 음주단속은 지역사회의 방역 대책 준수 요청을 무시하는 듯한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를 엿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동부경찰은 19일 밤 9시부터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점 앞 3차로 중 2개 차로에 4명의 경찰을 세워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이 차를 멈추세우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30~50cm 가량의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들이밀어 차량 내부 알코올 농도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이날 단속에서도 적발자가 잇따랐다.

밤 10시 20분께 창문을 내리고 운전을 하는 경우 감지가 잘 되지 않는 기기 단점에도, 은색 에쿠스 차량 내부에서 감지기에 적색 불이 켜지며 ‘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단속 경찰은 곧바로 운전자 A(28)씨에 대한 하차를 요구했고 인근에 세워둔 경찰 승합차로 이동한 뒤 음주 측정기를 들이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3%.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광주시 방역 지침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시간(밤 10시)이 앞당겨졌지만 운전자들의 귀가 시간이 앞당겨졌을 뿐 음주 운전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광주서부경찰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18일 밤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계 경찰 분석이다.

광주동부경찰 조영훈 교통안전계 팀장은 “비접촉식 감지기의 단점 때문에 멀리서부터 양쪽 창문을 열고 오는 차량의 운전자들도 기존 음주측정기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절대 현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부경찰이 지난 18일 밤 9시 50분께 서구 쌍촌동 천주교 광주대교구 앞길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서도 흰색 그랜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연말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와 지자체 요청이 있었지만 이들은 “상무지구에서 연말을 맞아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다”고 했다.

광주서부경찰 이병우 교통안전계 팀장은 “연말 연시 모임 자체 분위기로 야간 차량 통행량이 줄긴 했지만 음주운전 차량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올해 코로나 여파에도 음주 운전자와 사고는 크

게 늘었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0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44건)에 견줘 무려 10.8% 늘었다. 음주사고 및 사망자도 많았다. 올 들어 지난해까지 발생한 음주 사고는 533건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488건)보다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9명으로 지난해(5명)보다 많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같은 점을 들어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상무지구 등 유흥가 밀집지역, 최근 3년 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시간과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승자 처벌기준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 동승자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동승자 단속 방침은 소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날 단속 중에도 함께 있던 동승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서부경찰이 이날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그랜저 차량의 동승자도 술기운으로 얼굴이 빨갛고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체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에 대해서만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계 격상으로 인한 각종 모임·행사 자제·금지 권고 및 식당 운영 제한 등에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았다”면서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방역 일탈

자가격리 위반 벌금·징역형
마스크 권고하자 되레 폭행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일탈 행동으로 다른 지역민들에게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모 대학병원 직원인 A(여·39)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점 때문에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자가격리토록 통보받고도 9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27분 가량 주거지를 이탈, 병원과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여·50)씨도 지난 8월 12일,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근무했던 점 등을 들어 다음날인 8월 13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자가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14일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가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모든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다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C(60)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40분께 나주시 남평읍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려다 말리는 버스기사 D(46)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운전석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E(65)씨도 지난 15일 오후 9시 10분께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올랐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택기사와 사비, 먹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로 북부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 11억 돌려받을 길 없네

“건보공단 전액 징수는 재량권 남용”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게 지급받았던 1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2부는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B이사장 등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용 환

수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조합측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측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1심과 2심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으로 전액징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재량행위로 당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는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도 이같은 점을 반영, “공단이 해당 요양병원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자격을 갖춘 의료

인이 시행했는지 여부,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비의료인이 개설한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법위반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처분한 점, 요양병원 운영성과가 이들에게 어떻게 귀속됐는지 살피지 않고 전액 징수 처분을 내렸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A조합 등은 형식적으로 의료생활을 설립한 뒤 조합을 운영자로 하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으로부터 개설기간인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1억2000여만원에 대한 전액 징수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인 특혜 진료’ 전남대병원 교수 징계 적법”

부인에게 ‘특혜 진료’를 제공해 감봉 및 징계 부과금을 부과받은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가 학교측을 상대로 ‘잘못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화순전남대병원 A 교수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 부인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14일까지 44차례에 걸쳐 입원수속 절차를 밟지 않고 병실이용료 436만여원을 내지 않았는데 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병동 특실,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2시간여 항암주사 치료를 받은 바 있다. A 교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이 외래환자가 이용하는 중앙주사실이 아닌, 입원환자가 쓰는 병실에서 항암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동 수간호

사에게 직접 또는 후배 교수를 통해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학교측은 이같은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역 1월 및 병실사용료의 2배인 징계부과금(872만4620원)을 부과했지만 A 교수는 학교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3월로 감경받았다. 다만, 징계부과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A 교수는 외래환자가 이용하는 중앙주사실이 아닌, 입원환자가 쓰는 병실에서 부인의 치료(항암주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병동 수간호사에게 직접 또는 후배 교수를 통해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부과금 처분도 재량권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